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05

창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5266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영농조합법인

소송대리인 [redacted]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변 론 종 결 2019. 4. 24.

판 결 선 고 2019. 6. 13.

주 문

1. 피고가 2017. 7. 7. 원고에게 한 취득세 12,534,690원, 지방교육세 1,069,340원, 농어촌특별세 281,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05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25.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12. 15. B으로부터 B, C 소유인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현물출자받아, 2015. 1.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현물출자 부동산').

다. 원고는 2015. 1. 28.경 피고에게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 부동산 중 B 소유였던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을 1,327,300,000원, C 소유였던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을 72,040,000원으로 기재하여 현물출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및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물출자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를 면제받았다.

라. 피고는 2017. 7. 7. 원고가 현물출자 부동산 중 별지 1 목록 순번 7 내지 15, 23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가 신고한 금액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557,302,320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05

제3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취득세 12,534,690원, 지방교육세 1,069,340원, 농어촌특별세 281,2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마. 원고는 2018. 8. 21. 피고에게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해 줄 것으로 경정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9. 19. 원고가 2015. 1. 28.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정 거부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13, 15~17, 을 2~4, 1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당사자들 주장

1) 피고 주장

가) 취득세 추징 사유 존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14. 12. 15. 이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영농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의 추징사유가 인정된다.

나) 과세표준은 취득세 면제신청 당시 원고가 신고한 가액임

(1) 원고는 창립총회에서 현물출자 부동산 가액을 13억 8,730만 원(그 중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05

사건 부동산의 가액 557,302,320원)으로, 총 출자금을 30억 원(1좌의 금액 10,000원, 총 출자좌수 300,000좌)으로 정하여 그 금액을 법인장부에 등재한 후 등기하였고, 위 금액을 현물출자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고가 신고한 가액 557,302,320원이다.

(2) 원고가 그 필요에 따라 현물출자계약서를 관계 기관에 제출하고 취득세 신고를 한 후, 과세관청이 취득세를 추징하자 현물출자내역은 조합설립 관련 업무를 전적으로 위임받은 조합원 중 1명이 부풀려 신고한 것이어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의칙을 위반하는 주장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2) 원고 주장

가) 취득세 추징 사유 부존재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지목이 임야인 토지 일부를 밭으로 개간하여 실제로 농지로 사용하였고, 바위나 절벽, 묘지, 금양임야 부분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이 사건 부동산 중 D 토지 및 그 지상 주택(별지 1 목록 순번 7, 8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의 주사무소이며, 원고는 위 건물을 대표이사 B의 거주지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각종 농작물과 농기계, 농기구를 보관하고 농업활동을 준비하는 장소로 사용함으로써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

나) 과세표준 산정 위법

(1) 원고는 취득세가 당연히 면제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형식적으로 취득세 신고를 하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 가액 557,302,320원을 지방세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05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은 신고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형식적으로 한 신고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신고한 가액을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가액으로 보더라도, 현물출자 평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가치보다 터무니없이 높게 부풀려진 금액으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부풀려진 현물출자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취득세 추징 사유가 인정되는지

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영농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는 기업적 농업경영체 육성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면서도(제1항), 농업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을 하는 영리목적의 상법상 회사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의 지목이나 면적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대규모 농지를 취득할 개연성이 높고, 농업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제도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등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제3항).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농업법인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면서도 일정한 경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05

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조항을 둔 취지 및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농업생산성을 높이려는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취지, 구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에 의하면 농업인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점,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13조 제5호는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를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중 1명이 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한 토지에서 농업을 경영한다고 하여 곧바로 토지 소유자인 영농조합법인이 그 토지를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것으로 보아 영농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2)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5, 6, 8~11, 을 1, 4~8,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영농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영농조합법인인 원고가 설립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아닌 B이 원고 소유인 현물출자 부동산에서 농사를 지어온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영농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❶ 원고 설립 당시 작성된 정관에는 B, F, G, H, I, J, K 등 7인이 조합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B을 제외한 6인은 현물출자 부동산이 위치한 경남 함양군이 아닌 서울이나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었고, '농업인'이 아니며, 원고의 영농활동에 관여한 적도 없고, 원고 정관에 정한 조합원의 출자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6인은 늦어도 2018. 3. 31. 이전에 모두 조합을 탈퇴하였다.

❷ 현물출자 부동산은 B과 B의 배우자 C이 소유하던 토지로서 B은 현물출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05

전부터 현물출자 부동산 중 전, 답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으며, 현물출자 후에도 B이 위 부동산에서 종전과 동일하게 농사를 지었다.

❸ 원고는 2014. 11. 25.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2014. 12. 1.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그로부터 약 2개월 만인 2015. 2. 15. 폐업신고를 하였다. 또한 원고는 영업과 관련하여 회계장부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2018. 6.경까지 법인세 등 아무런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17. 9. 28.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8. 6.경 원고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갑 제6호증)을 바탕으로 2015년 내지 2017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을 소급작성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기는 하였으나(갑 제8호증 내지 10호증이 소급하여 작성한 서류들이다), 이는 오로지 위 계좌 거래내역만을 토대로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증빙자료가 없다.

❹ 농업인이나 영농조합법인에게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 지급되는데, B은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에서 재배된 농작물에 관한 2016년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자신의 명의로 수령하기도 하였다.

❺ 원고의 주사무소는 별지 1 목록 순번 8 기재 건물로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는 영업과 관련하여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 소급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한 2018. 6.경까지는 법인세 등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다. 위 건물에 원고 법인의 사무를 보는데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 2017년 현장조사시 피고가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위 토지 및 건물은 농기계 및 농기구 보관, 농작물 보관 장소로 사용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원고의 대표이사 B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보일 뿐이다. 설령 농기계 등이 보관되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05

있었더라도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면 B이 아닌 원고가 그 농기계 등을 영농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건물에서 원고 업무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건물 및 그 부지를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❻ 2017년 현장조사 당시 밝혀진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1 목록 순번 9~15, 23 기재 임야의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의 계좌 내역상 원고가 2015년경 감나무 등과 들깨, 고사리, 더덕을 재배하거나 임산물을 채취하여 판매한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순번	지 번		지목	면적 (㎡)	현황
9	[redacted]군 L리	M	임야	107	일부 면적이 농로로 이용 5년생 이상의 감나무 3~4그루가 심어져 있음
10	〃	N	임야	2,045 (4/6 지분)	개간되지 않은 임야
11	〃	O	임야	869	일부 들깨와 5년생 이상 호두나무, 두릅나무, 감나무 등이 20~30여 주 심어져 있음
12	〃	P	임야	116	Q 소재 주택부지, 마당, 축대 및 골목길로 사용
13	〃	R	임야	105	Q 소재 주택부지, 마당, 축대 및 골목길로 사용
14	〃	S	임야	9,322	개간되지 않은 임야
15	〃	T	임야	5,455	개간되지 않은 임야
23	[redacted]군 U리	V	임야	3,756	고사리밭 약 1,000㎡를 제외한 토지는 개간되지 않은 임야 고사리밭 약 1,000㎡는 고사리 반, 칡넝쿨 반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잡목을 제거한 후 더덕 씨앗을 뿌려 재배하는 곳은 확인되지 않음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금양임야 등을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05

가 있는지

(1) 위 가)항에서 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농업법인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면서도 일정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조항을 둔 취지를 고려하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농업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영농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가 포함된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영농 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영농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188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금양임야, 묘지, 바위 및 절벽 부분을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❶ 금양임야는 그 안에 분묘를 설치하여 이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를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50293 판결 등 참조), 금양임야에 해당하는 토지는 그 성질상 개간하여 영농에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이며, 다만 임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분묘인 토지 역시 그 성질상 개간하여 영농에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농업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이 금양임야 또는 분묘라는 사정은 그 부동산을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❷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영농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05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 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업계획에 의한 산지전용, 토지형질변경신청,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 산림경영계획서 및 묘지 이전과 관련된 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❸ 농업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중 일부가 바위나 절벽이라는 사정은 취득한 부동산 중 해당 부분을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임야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임야 중 바위 또는 절벽 부분만을 구분하여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신고 가액이 존재하는지

(1)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은, 일반적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과 달리,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과세면제받은 후 해당 과세물건이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며,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득세가 면제되었다가 해당 과세물건이 추징 대상이 된 때에 그 추징되는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추징 대상이 된 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05

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취득세 면제신청을 하면서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추징 사유가 발생하기 전 취득세 면제신청 과정에서 이루어진 취득세 신고에 대하여 지방세법이 정한 취득세 신고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추징 사유 발생 후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를 하면서 종전 취득세 신고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두240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처분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현물출자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므로, 취득세 면제신청을 하면서 취득세 신고서에 기재한 과세표준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의 신고 가액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부동산이 추징 대상이 된 후 원고가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본문의 신고 가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인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5항 제3호는 제2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로서 '판결문 ·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현물출자 부동산에 관하여 그 가액을 13억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05

8,730만 원(그 중 이 사건 토지의 가액 557,302,320원)으로 기재한 법인장부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6. 30. 대통령령 제26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법인장부는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 · 보조장 · 출납전표 · 결산서를 말하는데, 원고가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현물출자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피고 주장과 같이 기재한 법인장부를 작성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557,302,320원으로 보아 이를 근거로 취득세 등 세액(가산세 포함)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달리 이 사건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서아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05

판사 조현욱

판사 강희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05

별지 1

현물출자 부동산 목록

순번	지 번		지목	면적(㎡)	원 소유자	비고
1	함양군 L리	W	전	136	B	
2	〃	X	전	197	C	
3	〃	Y	답	1,815	B	
4	〃	Z	도로	166	B	
5	〃	AA	답	60	B	
6	〃	AB	답	452	B	
7	〃	D	대	466	B	
8	〃	D	지상 건물	126	B	
9	〃	M	임야	107	B	
10	〃	N	임야	2,045 (4/6 지분)	B	
11	〃	O	임야	869	C	
12	〃	P	임야	116	C	
13	〃	R	임야	105	C	
14	〃	S	임야	9,322	B	
15	〃	T	임야	5,455	B	T 임야 673㎡와 AC 임야 4,782㎡로 분할됨
16	함양군 U리	AD	답	1,20	B	
17	〃	AE	답	1,402	B	
18	〃	AF	답	1,386	B	
19	〃	AG	답	860	B	
20	〃	AH	답	542	B	
21	〃	AI	답	816	C	
22	〃	AJ	답	2,344	B	
23	〃	V	임야	3,756	B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05

별지 2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지방세기본법」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05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18조(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150조(납세의무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05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취득물건(제1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 제1항 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감면조례(이하 "지방세감면법령"이라 한다)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1)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6. 30. 대통령령 제26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 구 농어촌특별세법(2015. 6. 22. 법률 제13383호로 개정되어 2015. 12.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제4조(비과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농어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농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15. 2. 27. 대통령령 제26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비과세)

①법 제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 제1항·제2항·제3항에 따른 감면

■ 구 지방세기본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되어 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 결정하는 때
3. 제1호 외의 지방세: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②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05

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출자, 사업,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조합법인의 설립등기)

① 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이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13호의 사항
2.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 및 임원(이사와 감사를 두는 조합법인만 해당한다)의 주소와 성명
3. 2명 이상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조합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4.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총출자액

③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 의사록
2. 정관
3.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4.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농업인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영어조합법인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이 어업인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0조(조합법인에 대한 출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05

①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현금 및 그 밖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조합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탈퇴 및 제명의 경우 지분의 계산에 관한 사항
8. 출자액의 납입방법·산정방법과 조합원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9.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적립금의 비율과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1.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2. 총회나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3.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 그 사유에 관한 사항

제13조(조합법인의 해산)

조합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1.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
2. 조합법인이 합병된 경우
3. 조합법인이 파산한 경우
4. 법 제20조의3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176조에 따른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5.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협동양식어업면허를 취득한 영어조합법인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2015. 6. 22. 법률 제13383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정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05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54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농업의 범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4조(농업소득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과 범위에서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소득보조금(이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은 매년 지급하고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제6조(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05

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서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으로 선정된 농업인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전업농업인(專業農業人)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3. 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동안의 기간 중 1년 이상 법 제5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등. 다만,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의 농촌(이하 "농촌"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인등의 경우에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만 해당한다.
 가. 농업인: 1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농지는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대하여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논농업 또는 밭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나.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5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농지는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대하여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논농업 또는 밭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4. 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 또는 그 이전에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등록자"라 한다)이 사망하거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농지에서 계속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등록자가 사망하거나 뇌사판정을 받기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05

이 한(사망 또는 뇌사판정 전에 치료를 목적으로 그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주소를 같이 한 기간에 산입한다) 농업인. 다만,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연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가. 농촌에 주소를 두는 농업인

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영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

5. 등록자가 고령·질병 또는 부상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농지에서 계속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등록자가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치료를 목적으로 그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주소를 같이 한 기간에 산입한다) 농업인. 다만,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6.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 또는 제24조의4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 이 경우 법 제8조 제6항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에 법 제5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등이어야 한다.

가. 농업인: 1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농지는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등록하기 직전 연도에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

나.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5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농지는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등록하기 직전 연도에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